

2026년 가구부문 경상조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

국가데이터처 원주사무소에서는 「2026년 가구부문 경상조사」 업무를 수행할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6. 1. 19.
국가데이터처 원주사무소장

1 모집인원 및 계약기간

지역	모집 구분	모집 인원	계약 방법	계약 기간	수당	비고
원주	도급 조사원	1명	도급 계약	· 교육: 2026. 2. 4(1일)	1일 82,560원	
				· 조사: 2026. 2. 2~12. 31. (기간 중 132일 이내)	도급금액 지급*	

- 1) 위 내용(계약기간 등)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2) 도급조사원의 경우 개인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, 미가입자는 가입 후 모집(의무가입)
- * 도급조사원: 교육(1일)은 1일 기준 82,560원
 - 기간 내 부여된 업무량 완료 실적에 따른 해당분의 도급금액 지급
 - 교통비 지급(관내조사구 담당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구당 20,000원 이내 지급)
 - 담당 업무량에 따라 일수 및 수당이 변동될 수 있음

2 담당업무

담당업무	주요 담당업무
도급조사원 (도급계약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경제활동인구조사(부가조사 포함), 집세조사에 대한 업무 담당· 현장조사 운영지침에 따른 조사기간 중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현장조사 실시하고 조사표 작성· 전산입력 및 내용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내용은 재확인·수정 보완· 담당 공무원의 내용검토 중 조사 착오 발생 시 재조사· 담당 공무원의 소집에 응하며, 전달사항 및 작성사항 점검 등

3

선발방법

□ 1차 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하여 응모자의 모집 제한 여부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

□ 2차 전형(서류평가,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
-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,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
- 자기소개서 내용 및 경력 등을 평가하여 합격자 결정

4

응시 자격요건

-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
-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

5

전형일정

- 최종합격자 발표 : 2026. 1. 30.(금) 16:00 이후
- 공고 국가데이터처 채용정보(<https://kostat.go.kr/fjob>) > 합격공지 > 강원지방데이터지청
※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6

지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6. 1. 19.(월) ~ 2026. 1. 26.(월) 18시까지
- 접수처

기관명	담당자	주소	전화번호
국가데이터처 원주사무소	최덕진	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50, 나라키움 원주청사 3층	전화: 033-769-3723 팩스: 033-732-0632 이메일: www.gangwonf1@korea.kr

- 접수방법 : 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 접수
 - 방문 접수는 평일 09:00~18:00(토, 일, 공휴일 제외) 내에 접수 가능
 - 관련 증빙서류는 팩스 또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가능(도착 여부는 본인이 확인)
 -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

7

제출서류

- 도급조사원 응시원서 1부(붙임1)
- 자기소개서 1부(붙임2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(붙임3)

<해당자 추가 제출서류>

- 자격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털 이용 시 제출)
- 상해보험 가입 증명서류 1부(도급조사원 최종합격자에 한함)
-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개인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
- 관련서류 제출기한 : 2026. 1. 19.(월) ~ 2026. 1. 26.(월) 18:00까지

※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모집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이며, 반환 청구(붙임5) 시에는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반환(단, 모집이 확정된 자는 제외)

8

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.
- 이전 1년 동안 국가데이터처에서 실시한 모든 모든 통계조사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“불량”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.
-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국가데이터처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.
- 겸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, 계약서 상에 명시하는 대로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국가데이터처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.

- 도급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함.
 - ① 계약서 작성 전(교육 미이수) : 수당 미지급
 - ② 계약서 작성 후(교육 이수) : 교육수당 지급
 - ③ 조사수행 중 : 조사 완료 실적에 따라 수당 지급
- 전시 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의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.

9 **모집기관 및 문의처**

기 관 명	담당자	주 소	전 화 번 호
국가데이터처 원주사무소	최덕진	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50, 나라키움 원주청사 3층	전화: 033-769-3723 팩스: 033-732-0632 이메일: www.gangwonf1@korea.kr

【붙임2】

자 기 소 개 서

조사명	2026년 가구부문 경상조사	분 야	도급조사원
성 명		전 화	

(유의사항)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
300자 내외로 작성(15point, 굴림체)
(과거 경력관련 내용 등)

- 과거 경력, 일반경력(지자체 통계조사 경력 등) 등을 자유롭게 작성

(지원동기 및 포부 등)

- 지원동기 및 포부, 국가데이터처 조사관련 표창 및 체험수기 제출 내역 등을 자유롭게 작성

【붙임4】 (해당자만 제출)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국가데이터처 원주사무소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도급조사원 모집 및 관리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이용 대상	행정정보명	이용 대상	행정정보명
<input type="checkbox"/>	국가기술자격증(대한상공회의소)	<input type="checkbox"/>	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

* 이용 대상 행정정보명에 체크(☑)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(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) 번호 :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년 월 일

대상자 본인
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

전화번호 :

【붙임5】
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국가데이터처 원주사무소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